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 서 명	페 이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

2017. 6. 1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24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부터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까지

5.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고, 정식기구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6. 주요 개정 내용

- 가. 사업소 “마포중앙도서관” 관련 장 및 조문 신설 (안 제4장 제13조부터 제14조)
- 나. 관계 조문 수정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제28호, 제5장제15조부터 제17조)
- 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부칙)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고, 정식기구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조문수정을 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기구에 대한 업무의 인계와 인수, 결산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24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5.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 구청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6. 주요 개정 내용

- 가. 정원관리 기관으로 사업소를 신설하고, 정원의 총수를 1,386명에서 1,413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310명에서 1,337명으로 증원 (안 제2조, 별표 2)
- 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및 별정직 비서의 직급을 현행 '6급 상당'에서 '5급상당'으로 상향 (안 별표 2, 3)
- 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부칙)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 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구청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정원관리 기관으로 사업소 형태인 “마포중앙도서관”를 신설하고, 정원의 총수를 1,386명에서 1,4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은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사업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른 것임.

마포구 교육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마포중앙도서관”을 신설하고 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 할 수 있으나, 마포구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도서관 건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일부 부족함이

있는바, 향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조정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음.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별정직 5급 직급 비율을 40%(2명)에서 60%(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별정직 비서의 직급을 현행 '6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만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을 5급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 재량으로 직급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한 사항임.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업무효율 및 조직안정을 증대시키고자 12개 자치구가 비서실장 직급을 '5급 상당'으로 상향 변경하여 보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